

## 중동전쟁으로 인한 현장의 고용위기, 신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빈틈없이 지원한다.

- 고용노동부, 4.13.(월) 제3차 비상고용노동상황 점검회의 개최
- 추가경정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에 만전, 현장의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등 신속히 개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13일(월),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제3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용충격에 선제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추경 집행계획을 점검하였다.

지난주 고용노동부 소관 4,165억원의 2026년 제1차 추경이 확정되었다.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의 위기로부터 고용충격 완화, 취약노동자의 권리구제와 생활안정, 청년층 집중지원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김영훈 장관은 추경 사업별 집행계획을 점검하며, “각 사업별로 수립된 집행계획에 따라 즉시 공모절차에 착수하고, 지방정부와 적극 협의하는 등 차질없는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였다.

특히, 청년고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청년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청년 일자리 예산이 단 한 푼도 불용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지역 내 우수한 중견기업의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기업과 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대기업이 제공하는 양질의 일경험과 직업훈련이 지방 청년들에게 깊숙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관서별로 석유화학, 철강 등 위기가 가시화된 업종별 협력업체 등의 동향을 보고하였다. 현장에서는 고용유지 등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김영훈 장관은 “제도적 요건이나 절차가 현장과 괴리되어 있다면 이를 신속하게 개선하여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라며, 다음과 같이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하였다.

① 먼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도는 고용 충격을 적시에 포착하고, 일용직의 고용 상황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량요건 판단기준을 개선한다. 참고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및 행정예고 등을 거쳐 신속히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26.4월).

\*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급격한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업종을 지정·지원

② 고용유지지원금\*의 세부 인정기준도 마련한다. ▲ 원유수급 차질에 직접 타격을 받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 화학 물질 및 제품 제조업종의 사업주, ▲ 최근 중동상황으로 물류 애로를 겪는 중동수출 사업주에 대해서는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인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 시 지원금 지급  
↳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제도	전	후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 산정기간: 직전 12개월 · 상용직 기준으로 판단	· 산정기간: 직전 6개월 · 정량요건 판단 시 일용직의 구직급여 신청(회사사정)도 포함
고용유지지원금	· ▲ 원유 수급 차질에 직접 타격을 받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C19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업종의 사업주, · ▲ 「2026년도 중동 특화 긴급 물류바우처 사업」(중기부), · ▲ 「산업통상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산업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_긴급지원바우처 2차)」(산업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주에 대해 매출액 감소 기준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김영훈 장관은 “중동전쟁의 불안정한 정세가 우리 실물경제와 일자리에 직접적인 충격으로 언제든지 본격화될 수 있다”라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공급망 충격이 일자리와 취약계층의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긴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최영범 (044-202-7026)
		담당자	서기관	장지훈 (044-202-7027)
			사무관	김진영 (044-202-7028)
		사무관	차정환 (044-202-7032)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지영철 (044-202-7404)
		담당자	사무관	최서현 (044-202-7413)
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	책임자	과 장	박순홍 (044-202-7227)	
	담당자	사무관	김지현 (044-202-7229)	



## 참고

## 고용위기지역 · 특별고용지원업종 정량요건 개선(안)

□ 정량요건 산정기간 단축: 직전 12개월 → 직전 6개월

- 지표 산정기간 단축을 통해 단기적 충격이 희석·분산될 가능성을 낮추어 지표 민감도 제고, 고용충격 적시 포착

전	후
① 직전 12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증감률이 전국 증감률보다 5%p 이상 저조	① <b>직전 6개월간</b>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증감률이 전국 증감률보다 5%p 이상 저조
② 직전 12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년동기대비 5% 이상 감소	② <b>직전 6개월간</b>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년동기대비 5% 이상 감소
③ 직전 12개월간 구직급여 신청자가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③ <b>직전 6개월간</b> 구직급여 신청자가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④ 직전 12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사업장이 전년동기대비 5% 이상 감소	④ <b>직전 6개월간</b> 고용보험 사업장이 전년동기대비 5% 이상 감소

□ 구직급여 신청자 판단범위(이직사유)에 '일용직'의 회사사정 사유 추가

- 상용직보다 상대적으로 고용 불안정성이 큰 일용직의 특성을 고려, 일용직의 “회사사정” 사유<sup>코드1</sup>로 인한 구직급여 신청도 포함

\* (변경 전) 구직급여 신청자 요건 판단 시 코드 22, 코드 23로 인한 신청자만 판단  
(변경 후) 코드 1로 인한 신청자도 판단범위에 추가

### 〈 피보험자격 상실(이직) 사유 〉

상용노동자 (+예술인·노무제공자 포함)	일용노동자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
22. 폐업·도산(예정포함), 공사 중단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계약파기 포함) 26.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해지·파기	1.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 (폐업, 공사중단, 공사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 개인사정, ▲ 근로조건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 노무제공종료 등	▲ 부득이한 개인사정, ▲ 기타 개인사정, ▲ 노무제공종료 등

## 제3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모두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관입니다.

중동전쟁이 2주 휴전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폭격이 계속되고 해협의 통행이 제한되는 등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중동전쟁의 불안정한 정세는 우리 실물경제와 일자리에 대한 직접적인 충격으로 언제든지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공급망 충격이 일자리와 취약계층의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그 어느때보다 긴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2026년 제1차 추경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편성된 4,165억원은 중동전쟁의 위기로부터 고용충격을 완화하고, 취약노동자의 권리구제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며, 일자리 충격에 취약한 청년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예산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금의 위기를 막아낼 '방파제'입니다.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집행이 늦어지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본부와 각 지방관서는

이번 추경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 사업별로 수립된 집행계획에 따라

즉시 공모 절차에 착수하고,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개선하는 등  
차질없는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추경의 핵심은 청년 일자리입니다.

가뜩이나 청년고용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대외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일자리를 통해 희망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청년 일자리 예산은

청년들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입니다.

여러분들은 청년 일자리 예산이 단 한푼도 불용되지 않도록

한 발 더 먼저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내 우수한 중견기업에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기업과 참여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대기업이 제공하는 양질의 일경험과 직업훈련이

지방 청년들에게 깊숙이 전달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불확실성과 싸우고 있습니다.  
대응이 늦으면 통제 불가능한 위기가 되고,  
대응이 빠르면 관리 가능한 위험이 됩니다.

각 지방관서는

중동전쟁의 영향이 가시화된 업종을 중심으로  
연계된 협력사 등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도적 요건이나 절차가 걸림돌이 되어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과 기업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때 도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공직자로서 우리의 판단기준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가.”

현재의 요건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경제 전시상황임을 감안해

과감하게 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먼저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의

지정요건 판단 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일용직의 고용 상황도 반영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선하여

즉각 위기를 포착해

실시간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에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그리고 중동수출 사업주 등에 대해,  
매출액 감소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모든 정책은 타이밍입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매 순간이 적시입니다.  
우리 모두가 역량을 집중해서  
적시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냅시다.

최근 저는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많은 분들을 마주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현장에서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역시 현장이 답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현장에 더 많이, 더 자주 다가가겠습니다.  
각 지방관서에서도 현장과 더욱 밀착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 노조법과 관련하여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개정 노조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나,  
법 시행 후 한 달이 되는 현시점에서  
혼란을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시행 초기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축적된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 노동위원회 판단을 통해  
사용자성을 확인한 후 교섭을 진행하는 등  
현장에서는 법이 정한 틀 내에서  
안정적인 교섭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위원회에서도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판단해 나가면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들을 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각 지방관서에서는 지금까지 잘 해오셨던 것처럼  
교섭요구, 교섭단위 분리 등 현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현장에서 법에 따른 질서 있는 교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현장에서 정확히 이해하며  
따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막 출발한 개정 노조법은  
노사간 대화의 시작이자  
상생의 질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현장 노사 모두 법 테두리 내에서  
질서 있는 교섭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차분하게 대응하고,  
정부도 함께하고 있는 만큼  
노사정 노력에 신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